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궁능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하여 심의 기준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,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궁능유적 촬영 범위 및 구분 현실화 등(안 제23조)

- 촬영 목적과 결과물의 상업용과 비상업용에 관한 구분 현실화

나. 장소사용허가의 예외 적용기준 삭제 및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 명문화(안 제34조 및 제39조)

-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사용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고, 국내외 주요인사 등의 방문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 명문화